

## 「대전시미래두배청년통장」 특약

### 제 1 조 적용범위

『대전시 미래두배청년통장』(이하 "이 예금"이라 함)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『예금거래기본약관』, 『적립식 예금 약관』, 및 『대전광역시 청년기본조례』에 근거한 대전광역시 '미래두배청년통장 사업 운영지침' (이하 "운영지침"이라 함)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
### 제 2 조 가입대상

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"운영지침"에 따라 '대전광역시 미래두배청년통장 사업 수행기관'(이하 "기관"이라 함)이 은행에 가입 승인을 통지한 실명의 개인 대상입니다.

### 제 3 조 예금의 종류

이 예금의 예금종류는 적립식예금으로 합니다.

### 제 4 조 계약기간

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24개월 또는 36개월 중 택일합니다.

### 제 5 조 가입금액 및 적립방법

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10만원 또는 15만원 중 택일하며, 매일 가입금액으로 적립기간동안 입금이 가능합니다.

### 제 6 조 이자지급

- 이 예금은 적립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기본금리에 제 7 조에서 정한 우대금리를 더하여 계산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만기일에 일시 지급합니다. 단,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만기일의 전영업일 또는 익영업일에 해지하여도 본 항을 적용합니다.
- 이 예금의 만기일 전에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적립금마다 입금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예금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중도해지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.
- 이 예금의 만기일 이후에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만기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만기 후 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본 조 제1항에 더하여 지급합니다.
-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중도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, 은행은 제 1항에 의한 금리로 계산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합니다.

### 제 7 조 우대금리

아래의 항목을 충족한 경우,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우대금리를 추가로 제공합니다.

(단, 중도해지시 미적용)

| 우대 항목                      |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급여 이체                      | 이 예금 가입후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기준,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급여 입금 <sup>(주1)</sup> 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카드 결제                      | 이 예금 가입후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기준,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하나카드(체크/신용) 결제 실적이 있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주택청약종합저축<br>또는<br>공과금 자동이체 | 이 예금 가입후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기준, 본인명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하고 있거나,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하여 2건 이상의 공과금 자동이체 거래를 한 경우 |

(주1) 급여 입금 인정기준 :

- ① 급여를 의미하는 문구가 포함된 적요\*로 입금된 금액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  
(ex. \*급여, 월급, 봉급, 연봉, 상여, 성과, 보너스, SALARY, PAY 등/ 등록직장명)
  - ② 회사에 의한 '급여코드'로 입금된 금액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
  - ③ 손님이 '급여일'을 지정(등록)하고, 해당일 포함 전후 1영업일 사이에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된 경우
- ※ 본인거래 및 비급여성(카드대금, 보험료 등)거래, 자동화기기 입금분, 가지급 등 비급여성 적요는 제외
- ※ 직장명 또는 급여일 등록 이후 입금 건부터 적용

## 제 8 조 해지방법

이 예금은 “기관”에 해지신청 후, 은행 앞 해지 승인 통지된 경우에 한하여 해지 가능 합니다.

## 제 9 조 수수료 우대서비스

당행의 입출금통장에서 이 예금으로 매월 자동이체를 통하여 입금하는 경우, 익월 1일부터 말일까지 아래의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1. 당행자동화기기, 인터넷뱅킹, 스마트폰뱅킹, 폰뱅킹(ARS)을 통한 타행이체수수료 (월 10회면제)
  2. 당행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인출 수수료 (월 10회면제)
- ※ 이 예금의 신규 가입후 다음달 말일까지는 자동이체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수수료 우대서비스 제공
- ※ 이 예금으로 자동이체 출금 계좌 등록한 입출금통장을 통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에 한하여 제공

## 부 칙

- 1.이 특약은 2023년 07월 03일부터 시행합니다.
2. 이 특약은 기존 가입자 포함 2025년 07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

※ 이 약관은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